

의안번호	제3062호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의결 사항	
----------	--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최두임 의원 등 5인
발의연월일	2026. 3. 6.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두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2
----------	------

발의연월일: 2026. 3. 6.

발 의 자: 최두임, 김향숙, 우정욱

허옥희, 이쌍자 의원(5인)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다. 이용대상(안 제5조)

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화언어법」,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6-4호

- 예고기간: 2026. 3. 6.(금) ~ 3. 12.(목)[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원

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3. 수어교육·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 청각·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조례제정하는 사항으
로 발의 의안이 시행되더라도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복지지원과장 천 미 옥

관 계 법 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0., 2020. 12. 29., 2024. 1. 2.>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2의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

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